

558 ▮ 제104회 총회 보고서



🥒 총회신학원 보고

제103회기 총회신학원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 : 원 장 이승희

서 기 김종혁

1. 조 직

1) 임 원 : 원 장 이승희, 부 원 장 송귀옥, 서 기 김종혁, 회 계 이대봉, 감 사 김정호, 교무처장 진용훈, 총무처장 노재경

2) 위 원: 김종준 강의창 정창수 박재신 이영구 최우식 이기택

2. 회의

1) 운영위원회의

(1) 제1차 회의

⑤ 일 시 : 2019. 2. 14(목) 13:0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֍ 결의사항

① 총회신학원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고, 조직은 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장과 총회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.

(원장 - 총회장 이승희 목사, 부원장-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 송귀옥 목사, 서기 -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, 회계 - 총회회계 이대봉 장로, 감사 - 총신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 목사, 교무처 장 - 총회회록서기 진용훈 목사, 총무처장 - 기획행정국장 노재경 목사)

- ② 편목교육 모집공고를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, 실무는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와 총회회록 서기 진용훈 목사와 총신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.
- ③ 총회신학원 운영위원회 규정과 학칙을 만들기로 하고, 실무는 김종혁 목사와 진용훈 목사와 김 정호 목사에게 맡기되,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기로 하다.
- ④ 총회신학원 사업자 등록과 학교형 형태의 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설립을 하기로 하고, 총회총 무와 기획행정국장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.

(2) 제2차 회의

⑤ 일 시 : 2019. 2. 25(월) 10:3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⑤ 결의사항

- ① 서기 김종혁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.
- ② 185여명의 편목 등록현황과 교육일정을 보고하니 편목교육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(첨부1. 편목 분류 기준).
- ③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 교육공고를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다.

- ④ 총회 신학원 재무 규정을 보고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실무진이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가결하다(첨부2. 총회신학원 회계관리 방안).
- ⑤ 편목 개강예배 순서를 확인하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.

(3) 제3차 회의

⑤ 일 시 : 2019. 3. 15(금) 10:30

⑤ 장 소 : 총신대회의실

● 결의사항

-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- ② 총회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수료 대상자 사정을 위해 교무처장 진용훈 목사로부터 별첨과 같이 접수 및 수업현황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, 총 186명 중 163명(2학기 115명, 4학기 40 명, 6학기 8명)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하다.
- ③ 수료예배 순서와 학사보고, 수료증을 점검하다.
- ④ 제출서류, 등록금, 출석, 성적 확인이 필요한 수료증은 추후 임원회에 일임하여 확인 후 발급하기로 하다.

(4) 제4차 회의

⑤ 일 시 : 2019. 3. 15(금) 13:00

⑤ 장 소 : 총신대회의실

֍ 결의사항

- ① 총신대학교가 총회 임원회나 총신운영이사회에 보고 절차 없이 총회인준 지방신대원(칼빈대, 대신대, 광신대) M.Div. 졸업자들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실시한 일과 관련하여, 총신대측에 세미나를 실행하게 된 경위보고와 학사보고와 재정보고를 일단 받기로 하고, 남은 비용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기로 가결하다.
- ② 총신대학교가 이미 총회인준 지방신대원(칼빈대, 대신대, 광신대) M.Div. 졸업자들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시행한 것은 추인하기로 가결하다.

(5) 제5차 회의

⑤ 일 시: 2019. 8. 21(수) 11:3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● 결의사항

-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.
- ② 총회신학원 설립 경과보고의 건을 보고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.
-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(안)을 심의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.

2) 소위원회의

(1) 제2차 실무소위원회의

⑤ 일 시 : 2019. 6. 7(금) 15:1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֍ 결의사항

① 미주 동부노회(2명), 서부노회(36명) 편목들의 강도사 고시 시취 추진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와



560 ▮ 제104회 총회 보고서

총신운영이사회를 통해 논의해보기로 하다.

- ② 2019년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수료증명서 발급 건은 보고된 대로 발급키로 하되, 문제가 있을 시 수정보완하기로 하다.
- ③ 총회신학원 운영정관을 6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다.

(2) 제1차 규정소위원회의

⑤ 일 시: 2019. 8. 8(목) 14:00

⑤ 장 소 : 총회회의실

֍ 결의사항

-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을 검토하다.
- ② 차기 회의를 8월 14일(수) 오후 3시에 총회회관에서 가지기로 하다.
- ③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1일(수) 오전 11:30에 가지기로 하다.

3. 총회신학원 필요성

1) 총회신학원의 필요성 대두

- ① 그동안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던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 결과 교육취소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에 대한 헌의안 이 총회에 상정되었고,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발생함.
- ② 그동안 누적된 편목들에 대한 교육 수요가 노회를 통하여 총회에 헌의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.
- ③ 칼빈대학교신학대학원, 대신대학교신학대학원, 광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총회신학 학원 명의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음.

2) 해결 방향

- ① 총회 헌법과 규칙 및 일반 교육법과 학원법 그리고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총회신학원을 운영할 필요가 급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신속히 일을 처리할 필요가 발생함.
- ② 총회가 목회자 준비교육을 직할체제로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.

3) 주요 진행과정

- ① 2018년 11월 30일(금) 총회인준신학교 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청원 특별위원회 임원회로 상정 결의
- ② 2018년 12월 5일(수) 총회임원회에서 총회실행위원회로 상정 결의
- ③ 2019년 1월 3일(목)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신학원에서 총회인준 신학교 졸업자와 편목교육 실시키로 함
- ④ 2019년 2월 25일(월) 총회신학원 사업자(89번) 허가 취득
- ⑤ 2019년 2월 25일(월) 총회 편목과정 개설됨
- ⑥ 2019년 2월 26일(화) 대신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약
- ⑦ 2019년 2월 26일(화) 칼빈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약
- ⑧ 2019년 2월 27일(수) 광신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약
- ⑨ 2019년 3월 2일(토) 총회인준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 교육 전형 및 위탁

- ⑩ 2019년 3월 28일(목) 총회신학원 사업자(82번) 허가 취득
- ① 2019년 6월 5일 학교형 형태 평생교육원 서울시 교육청 허락 받음
- ② 2019년 6월 7일(금) 학교형 형태 평생교육원에서 지식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으로 형태 변경함.
- ③ 2019년 8월 9일(금) 지식인력개발형 형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평생교육원 신청함.
- ④ 2019년 8월 23일(금)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평생교육원 허가 취득(예정)

4) 기대 효과

- ① 그동안 총회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을 교육하던 문제와 목회대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총회 헌법과 일반 교육법, 학원법, 세법에 관하여 저촉되던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.
- ② 총회 교육공동체 구축 및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.
 - 가. 4차 산업시대의 정보 전달 매체의 변화는 일반 서적에서 영상 매체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. 따라서 총회 지식정보 전달 체계도 이에 따라 영상과 오프라인 체계를 병행하는 브랜디드 개념의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.
 - 나. 원격교육 체계를 도입함으로 이랑적 학습체제를 쌍방향에서 체크하는 교육체계로 바꿈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
 - 다. 총회가 각종 교육체계를 실시하되 총회 인증제를 실시함으로 전국교회와 함께 교육의 호흡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다.
 - 라. 학점 은행제를 도입 실시함으로 총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도 높일 수 있다.
- ③ 전국교회 목사님들의 교육 활성화 유도
 - 가. 총회가 높은 질의 교육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전국교회 교역자들이 각 성도들에게 보완 설명함으로 총회교육과 교회교육의 병행토록 함으로 교역자들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.
 - 나. 목회자 재교육의 방향 및 교육의 범위를 폭 넓게 구가할 수 있다.
 - 다. 총회의 개혁주의 신학적 카테고리를 총회가 주도적으로 견지해 나감으로 전국교회 산하 평신도들의 보수적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.
- ④ 총회 재정 확보의 수월성
 - 가. 총회가 가진 자원을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<u>활용함으로</u> 총회 재정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.
 - 나.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국교회와 공유적 체계로 만들 뿐 아니라 재정 또한 전국교회와 함께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 총회와 전국교회의 유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.

5) 요청 사항

이 일의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전문 및 전담 인력이 최소한 2-5명 정도가 필요하다.



4. 규정(안)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

제1장총 칙

제1조(목적)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(이하 신학원)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합동) 직할로 운영하 되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목표)

- 1.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을 실시한다.
- 2. 칼빈신학대학원, 대신대학교신학대학원, 광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를 교육한다.
- 3. 편목을 교육한다.
- 4. 필요에 따라 총회산하 전국 교회의 구성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.

제3조(위치) 본 신학원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 내에 둔다. 제4조(교육위임) 필요에 따라 본 교단산하 타 기관에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구성) 본 신학원은 운영위원회로 총회 전현직 임원(직전 5명, 현직 정임원 5명, 현직 장로 부총회장) 및 총신운영이사회 임원(4인)을 두어 15명으로 운영한다.

제6조(임무) 본 신학원 운영의 제반 방향 및 정책과 학사관리 등을 결정하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한다.

제7조(조직)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.

- 1. 명예위원장 : 총회장 당연직으로 한다.
- 2. 위원장(원장) : 직전 총회장 당연직으로 본 신학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3. 부위원장 : 총신운영이사장, 직전 장로 부총회장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.
- 4. 서기 : 직전 총회 서기 당연직으로 본 위원회 문서 수발을 관리한다.
- 5. 회록서기 : 직전 총회 회록서기 당연직으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- 6. 회계 : 직전 총회 회계 당연직으로 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.
- 7. 감사(2인) :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임원임기) 매년 9월 교단 정기총회 후 자동으로 임기가 승계되며 종료된다.

제3장 산하기관

- 제9조(평생교육원, 총회목회대학원) 총회신학원은 산하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평생교육원(이하 평생 교육원)을 운영하며, 총회목회대학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 단 세부 조직 및 운영은 세칙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.
- 제10조(평생교육원 역할) 총회신학원 입학생은 자동으로 평생교육원생으로 자격을 획득하여 목적하는 바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.

- 제11조(평생교육원 교육범위) 목회자 재교육, 제직교육, 주일학교 교사교육, 주일학생 교육,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각종 수료증 및 자격증을 부여하고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한 학점은행제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2조(업무 처리) 평생교육원장이 운영위원회 결의 및 신학원장의 지침과 업무분장 세칙을 따라 실무를 관리한다.

제13조(평생교육원 부설기관) 각 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자산과 회계

제14조(관리) 본 신학원의 자산과 회계는 총회 유지재단의 자산관리 및 총회 회계 규정에 준하여 관리 및 집행하되 총회신학원 특성상 정부의 회계 원칙을 따르도록 하되 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부 칙

- 제15조(폐원) 본 신학원의 폐원은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 보고 후 처리하고, 잔여 재산은 총회에 자동 귀속된다.
- 제16조(정관 변경) 본 신학원의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7조(세칙) 본 신학원의 각 세칙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.

제18조(기타)

- 1. 본 정관은 기 시행된 총회신학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.
- 2.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우선으로 따르되 기타 부분은 만국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2019. 8. 21.